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(9급 1명)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, 국가기록원의 정원 1명(9급 1명)의 직렬에 식품위생직렬을 추가하며,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(5급 또는 연구관 1명)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16. ~ 6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3항제4호 중 “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”를 “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승강기 사고조사 판정위원회”를 “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 단서 중 “15명(전산사무관 1명, 행정주사 4명)”을 “13명(행정주사 3명)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7항 중 “4명(6급)”을 “5명(5급 또는 연구관 1명, 6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“2명”을 “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행정서기보 “11”을 “12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11”을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2 중 행정서기보 “11”을 “12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11”을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4 공업서기보 2 다음에 “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”을 신설하고, “위생서기보 1”을 삭제한다.

별표 4의2 공업서기보 2 다음에 “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”을 신설하고, “위생서기보 1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안전정책실) ① ~ ⑫ (생략)	제18조(안전정책실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
⑬ 승강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⑬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</u> 의 운영 지원	4. <u>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</u> ----- -----
5.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<u>승강기 사고조사 판정위원회</u> 상정안건 검토	5. ----- --- <u>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</u> -----
6. ~ 12. (생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⑭ ~ ⑯ (생략)	⑭ ~ ⑯ (현행과 같음)
제49조(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, 별표 2의2의 정원 중 <u>15명(전산사무관 1명, 행정주사 4명, 시설주사보 1명, 행정서기 7명, 전산서기 1명, 방</u>	제49조(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3명(행정주사 3명</u> ----- ----- -----

송통신서기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0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⑥ (생략)

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으며, 별표 8의3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(연구사 4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(6급 또는 연구사 4명)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⑧·⑨ (생략)

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은 2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5명(5급 또는 연구관 1명, 6급 -----

-----.

⑧·⑨ (현행과 같음)

⑩ -----

-----.

----- 6명 -----

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 ⑪ (생략)	----- -----. ⑪ (현행과 같음)
---	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49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	.		.		.		
	.		.		.		
행정서기보			<u>11</u>		<u>12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사무운영서기보			<u>11</u>		<u>10</u>	-1	
	.		.		.		
	.		.		.		

[별표 2의2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49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		•		•	•		
		•		•	•		
행정서기보			<u>11</u>		<u>12</u>	+1	
		•		•	•		
		•		•	•		
사무운영서기보			<u>11</u>		<u>10</u>	-1	
		•		•	•		
		•		•	•		

[별표 4]

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(제50조제2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공업서기보	2		
<u>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<u>위생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4의2]

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(제50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공업서기보	2		
<u>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<u>위생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